발 간 등 록 번 호
11-1430000-001679-14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나홀로 출원을 위한 디자인도면 작성 가이드북

Ver 1.0 (2019.3월 기준)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나홀로 출원을 위한 디자인도면 작성 가이드북

- 이 책은 출원인의 디자인출원을 돕기 위하여 디자인 도면 작성시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2019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디자인보호법 및 하위규정이 개정될 경우 도면작성 방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물품의 특성에 따라 도면 작성방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책자의 내용 중 오류나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경우,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김종균 사무관 (042.481.8602 / heideger@korea.kr)에게 연락 주십시오. 디자인 출원서 작성 중 발생하는 불명확한 부분이나, 추가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개정판에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 이 책의 내용은 비영리적인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발 행 처 :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디자인심사정책과
- 발 행 : 2019년 3월 30일

• 제작 : 김종균 • 자료제공 : 윤세균 • 도판 출처 : KIPRIS(www.kipris.or.kr)

인사말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 선진국입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모두 Big 5에 들 정도로 출원량도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또한, 디자인분야는 출원제도가 매우 발전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모든 출원과 등록이 이루어지고, 3D 프로그램 파일을 그대로 디자인출원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덕분에 온라인뱅킹을 해보신 분이라면 디자인출원도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에 비해 출원비용도 절약되고 시간도 절약됩니다.

하지만, 더 쉽게 만들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디자인도면 작성방법입니다. 특허청은 디자인 도면작성을 최대한 쉽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공통의 약속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디자인의 도면은 등록된 디자인의 권리 범위를 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확해야 합니다. 최근 나홀로 출원이 증가하는 가운데, 많은 출원인이 도면을 잘못 작성하여 거절당하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잘못 작성된 도면은 수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 책은 디자인도면 작성의 이해를 돕고, 좀 더 쉽게 출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획되었습니다.
도면작성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은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 좀 더 쉽고 편리하게 디자인을 출원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특허청장 박원주

시작하며

디자인출원에서 디자인도면은 특허출원의 청구범위와 대비됩니다. 디자인 도면은 출원인의 창작의도를 이해하고 안정적인 권리보호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디자인 도면을 작성하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감상을 위해 그리는 그림이 아니란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도면은 명확해야 합니다. 등록받을 디자인 이외에 부수적인 장식이나 연출, 회화적인 느낌의 펜터치, 보조선 등이 포함되면 안됩니다.

둘째, 상상으로 남겨진 부분이 있어선 안됩니다. 전체 물품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은 남아있지 않아야 하며, 도면만으로 다시 같은 물품을 만들어 낼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야 합니다. 디자인도면은 멋진 그림이 아닌 명확한 그림을 요구합니다.

목 차

1 등록가능한 디자인

2 디자인등록 출원서

3 도면작성 사례

4 출원서 작성 따라하기

1

등록가능한 디자인

산업디자인

- 독립적으로 거래가능한 양산 물품이라면 완성품과 부품 일체가 모두 법적 보호의 대상입니다. 다만, 공업 생산되더라도 분말 형태로 제조되는 등 형태가 일정하지 못하거나, 자연물, 조리된 음식과 같이 동일한 형태가 반복되지 못한다면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동일한 형태로 반복 생산되는 음식은 등록이 가능합니다.

  ✓ 거대한 기계에서 작은 부속품, 조립식 주택까지 대량생산 가능한 물품이라면 디자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 거대한 기계, 작은 부품디자인, 조립식 주택 등록 사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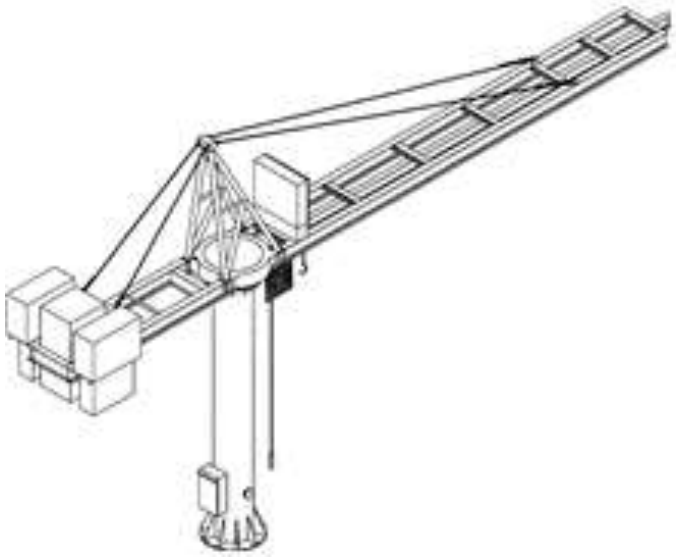

타워크레인 (30-03216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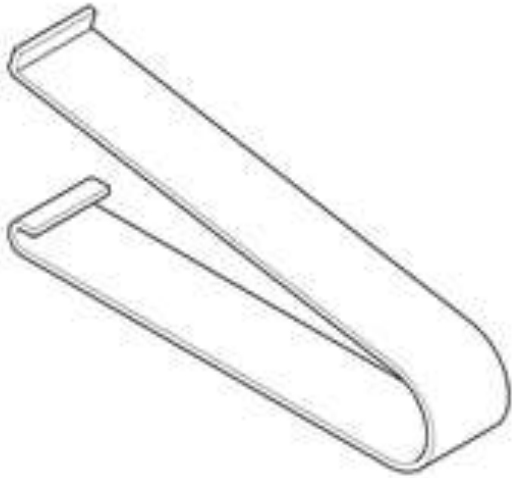

판스프링 (30-0411990)

조립식 주택 (30-0556500)

시각디자인

- 포스터, 패키지디자인, 라벨지 등 평면상에 인쇄되어 상업적으로 거래되는 품목이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픽포스터에서 포장지, 카탈로그 등 2차원(평면) 디자인제품은 대부분 일부심사*로 빠른 등록이 가능합니다.

✓ 일부심사란, 라이프사이클이 짧고 유행에 민감한 일부 디자인 물품*에 대해서 등록요건 중 ①디자인의 성립요건(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 ②공업상 이용가능성, ③창작성 중 일부(주지디자인에 의한 용이창작), ④부등록사유(공서양속, 기능성 등)에 대해서만 심사하여 빠른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 일부심사대상품목 : 로카르노 기준 3개 분류 제2류(의류/패션잡화), 제5류(섬유/직물류), 제19류(문구/사무용품등)

〈 그래픽포스터, 포장지 등록 사례 〉

일부심사

포스터 (30-0497592)

포장용 용기 (30-0466496)

일부심사

표딱지 (30-0279027)

패션/공예/텍스타일 디자인

- 모든 종류의 의복, 공예품, 텍스타일 디자인은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품은 모두 등록 가능되며, 공예품과 같이 손으로 제작되어 완전히 똑같이 재생산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한 형상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라면 가능합니다. 의복, 텍스타일 등은 일부심사로 빠른 등록이 가능합니다.

< 의복, 도자기, 직물지 등록 사례 >

일부심사

유니폼 (30-0528168)

도자기 (30-0600378)

일부심사

직물지 (30-0541096)

환경디자인

- 환경디자인 물품은 생산된 물품에 한해서 인정됩니다. 가령 가로등, 벤치, 버스승강장 쉘터(shelter), 자전거 보관소, 도로분리대 등 공장에서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되는 정도의 가로시설물 디자인이라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반면 벽돌로 쌓아 지어지는 물품(예:건축)은 등록이 어렵습니다. 다만, 조립식 주택이나 이동식 화장실과 같이 공장에서 생산된 후 운송할 수 있는 것이라면 대부분 등록이 가능합니다.

관련내용: 20페이지

〈 환경디자인의 등록 사례 〉

조립식 보도육교 (30-05802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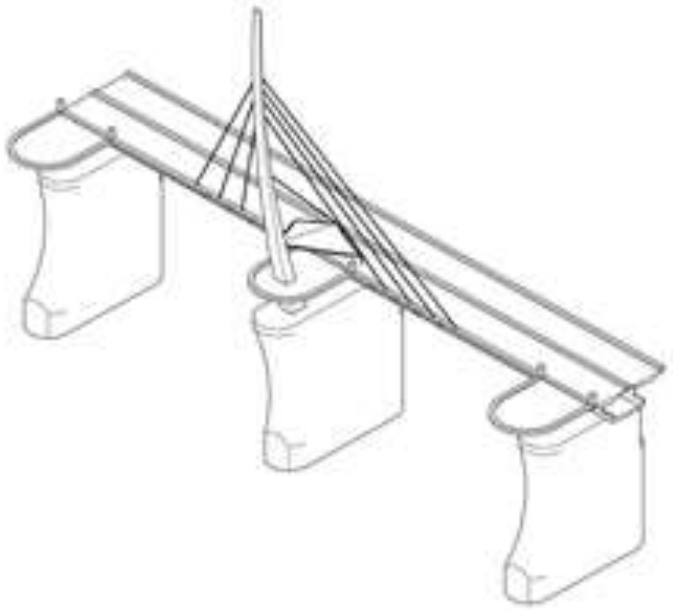

조립교량 (30-0611138)

글자체디자인

- 기본적으로 모든 종류의 서체는 등록 가능합니다. 다만, 등록조건이 일반디자인과 다릅니다. 특허청에서 지정한 글자와 보기문장, 대표글자를 모두 만들어서 등록해야 합니다.
- 한글 글자체는 지정글자 500자, 영문은 52자, 숫자는 10자, 특수기호는 119자, 한자는 900자의 지정글자가 있습니다. 폰트파일이나 소프트웨어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글자체디자인의 등록 사례 〉

한글글자체(30-09087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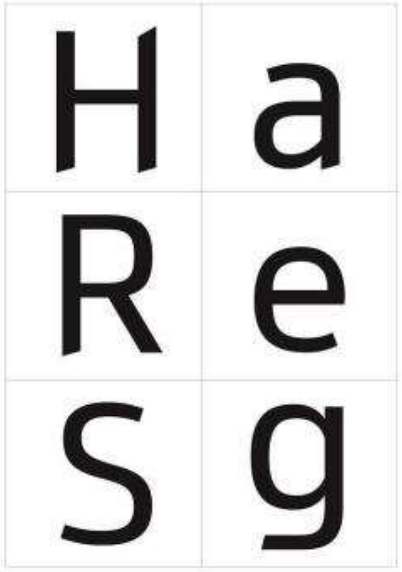

영문글자체(30-08866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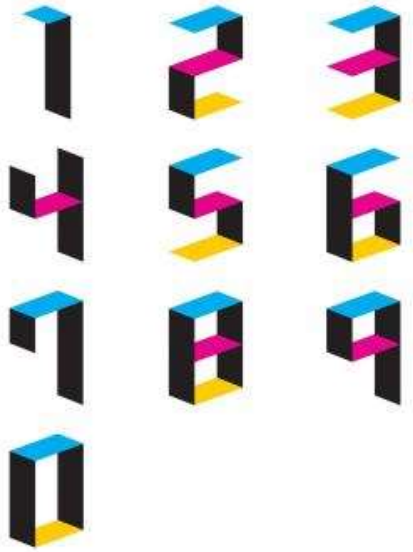

숫자글자체(30-0857844)

화상디자인

- 모니터 상에서 나타나는 모든 화면이 등록 가능합니다. 웹페이지나, 캐릭터, 아이콘, UI/UX화면, 인터페이스 디자인 등이 대상입니다. 프로그램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영역이며, 화면 상으로 보여지는 그래픽만 해당합니다.

관련내용: 40/41페이지

< 화상디자인과 동적화상디자인의 사례 >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휴대폰(30-0398542)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30-0910838)

2

디자인등록 출원서

디자인 등록 출원서

- 디자인 창작물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디자인 창작물을 명확하게 표현한 **도면**과 함께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디자인등록출원서 참조**

✓ **디자인등록출원은 특허청에 디자인을 등록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로 출원인은 일정한 형식을 갖춘 출원서와 도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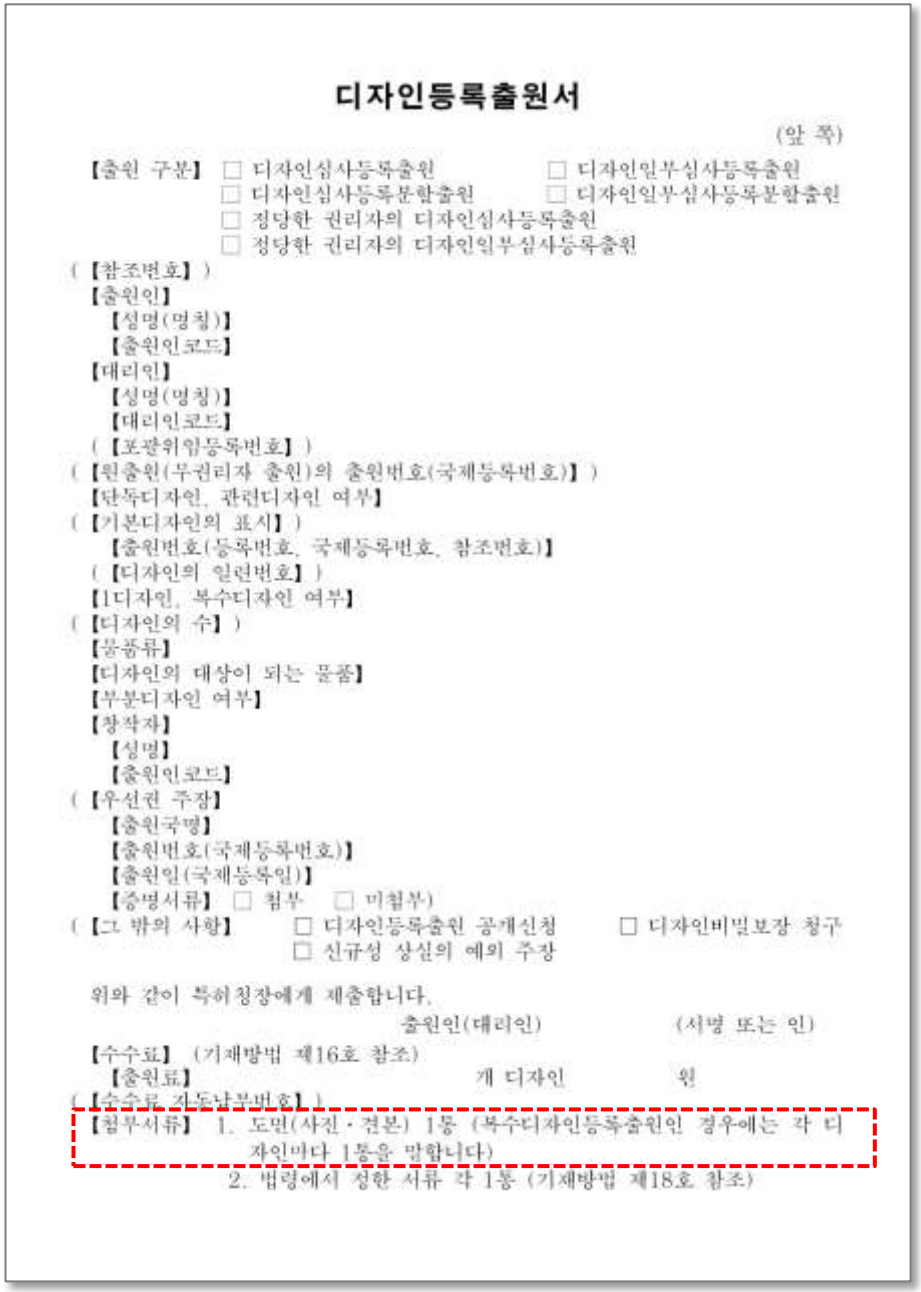

디자인등록출원서

(앞 쪽)

【출원 구분】 □ 디자인심사등록출원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 디자인심사등록분할출원 □ 디자인일부심사등록분할출원
□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심사등록출원
□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참조번호】)
【출원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원출원(무권리자 출원)의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단독디자인, 관련디자인 여부】
(【기본디자인의 표시】)
【출원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참조번호)】
(【디자인의 일련번호】)
【1디자인, 복수디자인 여부】
(【디자인의 수】)
【물품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부분디자인 여부】
【창작자】
【성명】
【출원인코드】
(【우선권 주장】
【출원국명】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출원일(국제등록일)】
【증명서류】 □ 첨부 □ 미첨부)
(【그 밖의 사항】 □ 디자인등록출원 공개신청 □ 디자인비밀보장 청구
□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기재방법 제16호 참조)
【출원료】 개 디자인 원
(【수수료 감면사유】)
【첨부서류】 1. 도면(사진·견본) 1통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각 디자인마다 1통을 말합니다)
2.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방법 제18호 참조)

첨부서류_디자인의 도면

- 디자인 창작물의 **물품류, 물품 명칭, 그에 대한 디자인의 설명과 창작내용의 요점 을 기재**하고, 디자인 창작물의 형태 전체가 올바르게 이해되도록 정해진 방법에 따라 도면을 평면상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디자인 도면 >

(【디자인의 일련번호】)
【물품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
【도면 1.1】
【도면 1.2】
【도면 1.3】
【도면 1.4】
【도면 1.5】
【도면 1.6】
【도면 1.7】

*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디자인 도면 참조

관련내용: 57페이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의 일련번호】)
【물품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
【도면 1.1】
【도면 1.2】
【도면 1.3】
【도면 1.4】
【도면 1.5】
【도면 1.6】
【도면 1.7】

***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및 제3항 관련 [별표 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기재시 유의사항

- 특허청장이 고시한 물품의 명칭에서 **하나의 물품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예) 의자 및 책상, 의자 겸용 책상 (X) → 의자가 구비된 책상, 탁자가 부설된 의자 (○)

- 특허청장이 고시한 물품의 명칭에 명시되지 않은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의 디자인을 인식하는데 적합한 명칭을 적되, 그 물품의 용도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의 명칭이어야 합니다. 다만, 물품의 일반화된 명칭이 없고 그 명칭이 **물품의 용도를 최소단위로 표현한 것**이라면 'OO용 부재' 등의 명칭은 사용 가능합니다.
  (예) 건축용 부재 (X) → 창틀용 부재 (○)

- **상표명** 또는 OO 식 OO 등과 같은 **고유명사**는 붙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자동식, 절첩식, 접이식, 독립형, 회전식, 조립식, 이동식 OO와 같이 보통명칭화 된 것은 예외
  (예) 샤넬가방 (X) → 가방 (○)

- 부분디자인 출원이라면 **"전체디자인"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컵의 손잡이 (X) → 컵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의 일련번호】)
【물품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
【도면 1.1】
【도면 1.2】
【도면 1.3】
【도면 1.4】
【도면 1.5】
【도면 1.6】
【도면 1.7】

*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및 제3항 관련 [별표 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기재 시 유의사항

- 물품의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물품 명칭의 기재 예시

구분	물품의 명칭
적용물품에 따른 용도의 기재	'안경용 경첩' '문짝용 경첩'
사용주체에 따른 용도의 기재	'동물용 신발' '환자용 신발'
사용방법에 따른 용도의 기재	'케이블 고정용 브라켓' '프레임 연결용 브라켓'

- 물품의 용도가 한정된 경우에는 'OO용 OO 장치' 인정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의 일련번호】)
【물품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
【도면 1.1】
【도면 1.2】
【도면 1.3】
【도면 1.4】
【도면 1.5】
【도면 1.6】
【도면 1.7】

*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관련 [별표 2]

[디자인의 설명] 기재시 유의사항

- **(물품에 대한 설명)** 물품의 사용목적・사용방법・재질 또는 크기 등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설명을 기재합니다.
  (예문) 이 디자인은 전기스탠드로 뒷면에 음이온 발생장치를 갖추고 있음. 전등갓 부분 재질은 유리이고, 몸체 부분은 철재임

- **(도면에 대한 설명)** 도면(사진 또는 견본을 포함한다.) 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도면별 설명을 기재합니다.
  (예문) 도면 1.1은 이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1.2는 이 디자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이며, 도면 1.3은 이 디자인의 윗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이고, 부가도면 1.1은 도면 1.2 중 A부터 A'까지의 단면도임

- **(도면에서 길이 표시 생략에 대한 설명)** 도면에서 길이 표시를 생략하여 그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이 명확하지 않아 생략한 길이의 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면상 몇 ㎜, 몇 ㎝ 또는 몇 m가 생략되었음을 표시합니다.
  (예문) 도면 1.1에서 표현된 디자인의 도면상 생략된 길이는 5㎝임

- **(도면의 색채에 대한 설명)** 도면 또는 사진에 색채를 입히는 경우에 흰색・회색 또는 검은색 중 하나를 생략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설명을 기재합니다.
  (예문) 도면 1.1에서 윗부분은 회색이고, 아랫부분은 검은색이며, 기둥 부분의 흰색은 생략하였음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의 일련번호】)
【물품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
【도면 1.1】
【도면 1.2】
【도면 1.3】
【도면 1.4】
【도면 1.5】
【도면 1.6】
【도면 1.7】

***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관련 [별표 2]**

[디자인의 설명] 기재시 유의사항

- **(열리고 닫히는 디자인 또는 펼쳐지고 접히는 디자인에 대한 설명)** 물품이 가지는 기능에 의하여 변화하는 디자인으로서 그 변화 전후의 상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설명을 기재합니다.
  (예문) 이 디자인은 자동차 뒤쪽의 스포일러 부분이 변화하는 디자인으로서 도면A 1.1부터 도면A 1.7까지는 펼쳐진 상태를 보여주는 도면이며, 도면B 1.1부터 도면B 1.7까지는 접힌 상태를 보여주는 도면임

- **(움직이는 물품의 디자인에 대한 설명)** 움직이는 물품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움직이는 상태를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지 상태, 동작 상태(동작 중의 기본적 자세, 동작 내용을 나타내는 궤적 등)에 관한 설명을 기재합니다.
  (예문) 이 디자인은 움직이는 "로봇완구"의 디자인으로서 도면A 1.1부터 도면A 1.7까지는 정지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이며, 도면B 1.1부터 도면B 1.7까지는 움직이는 연속 동작을 나타내는 일련의 도면임

- **(토목건축용품의 디자인에 대한 설명)** 토목건축용품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대량 생산성, 운반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설명을 기재합니다.
  (예문1) 이 디자인은 가옥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건축설계도에 따라 부품을 미리 생산·조립하여 시공하는 공법으로 이루어짐
  (예문2) 이 디자인은 교량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제로 제작·조립하여 시공하는 공법으로 이루어짐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의 일련번호】)
【물품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
【도면 1.1】
【도면 1.2】
【도면 1.3】
【도면 1.4】
【도면 1.5】
【도면 1.6】
【도면 1.7】

***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관련 [별표 2]**

[디자인의 설명] 기재 시 유의사항

- **(투명한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설명)**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투명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설명을 기재합니다.

  (예문) 이 디자인은 용기 내부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윗면의 덮개 부분이 투명 재질로 되어 있음

- **(부분디자인에 대한 설명)**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물품의 부분을 도면이나 견본에서 특정하고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설명을 기재합니다.

  (예문)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주전자의 손잡이를 나타내는 부분디자인으로서 등록받으려는 부분임

- **(화상디자인에 대한 설명)**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일시적으로 도형 등이 표시되는 화상디자인으로서 화상이 도시되는 부분만을 제출하는 경우 그에 관한 설명을 기재합니다.

  (예문)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디스플레이 패널에 나타나는 화상디자인으로서 부분디자인으로 등록 받으려는 부분이며 화상이 도시되는 부분 이외의 도면은 생략하였음

디자인의 창작 내용의 요점

(【디자인의 일련번호】)
【물품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
【도면 1.1】
【도면 1.2】
【도면 1.3】
【도면 1.4】
【도면 1.5】
【도면 1.6】
【도면 1.7】

***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관련 [별표 2]**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 기재시 유의사항

- 가능한 공지된 디자인과 비교하여 **독창적으로 창작된 내용**을 중심으로 쉽고 간결하며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 국내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자연물, 유명한 저작물 및 건조물 등을 모티브로 하여 창작한 경우에는 가능한 이들 형태로부터 독창적으로 창작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기재합니다.
- 문자 수는 가능한 **300자 이내로** 작성합니다.

입체디자인인 경우
(예문) 이 냉장고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실내 주방가구와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간결한 직선과 부드러운 곡선을 활용하여 표현하였으며, 정면 왼쪽에 표현된 홈 바(home bar)의 형상과 단순한 손잡이의 형상으로 도시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 창작내용의 요점임

평면디자인인 경우
(예문) 이 벽지 디자인은 하늘색 바탕에 연녹색의 추상적인 나무와 나뭇잎 모양을 배치하여 자연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이 창작내용의 요점임

(잘못된 예문)
눈꽃이 살포시 쌓이고 피어난 하얀 꽃송이. 바람불면 흩날리는 눈꽃의 향기가 하얀 마음이 되어 빛나는 모습을 담은 디자인으로 눈꽃송이 안에 숨어있는 깨끗한 디자인임

도면: 제출방법 개정(2014년 7월 이후)

(【디자인의 일련번호】)
【물품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
【도면 1.1】
【도면 1.2】
【도면 1.3】
【도면 1.4】
【도면 1.5】
【도면 1.6】
【도면 1.7】

*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도면] 기재시 유의사항

관련내용: 61페이지

- 기본 도면 제출방법이 종래 정투상도법에서 벗어나 2014년부터 자율화되었습니다.
- 기타 도면은 부가도면과 참고도면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출원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키프리스(KIPRIS)*사이트에서 출원하고자 하는 물품의 명칭을 검색후, 다른 사람은 어떻게 작성하여 등록 받았는지를 참고하시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 **가능한 최근의 디자인 등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 7월 이전의 등록사례는 도면의 명칭 및 표현방식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될 경우, 출원서 제출방법이 또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키프리스는 국내 등록된 모든 디자인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의 이름입니다. < WWW.KIPRIS.OR.KR >

3

도면작성사례

도면

-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디자인은** 디자인등록 출원시에 평면상에 기재한 **도면(圖面)을 통해 나타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디자인 도면, [제5호 서식] 글자체 디자인 도면 참조

- 디자인 도면은 **정해진 작도 방법을 통해 디자인의 대상물을 그려서 나타낸 그림**으로, 창작된 디자인을 구체화하고 특정화하는 조형적 수단 입니다.

- 도면이나 도안을 그리는 것을 제도(制度, Drawing)라 합니다.

디자인 도면은
- ✓ **디자인등록 받고자 하는 디자인의 내용을 표현하는 필수서류입니다.**
- ✓ **디자인심사시 실체적 등록요건(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성) 판단의 기초입니다.**
- ✓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를 특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 디자인 도면 작성의 잘된 예 / 잘못된 예

X

잘못된 도면의 예

✓ 형상, 모양이 구체적이지 않은 도면은 안됩니다.

✓ 형상선만 있고 모양이 없거나, 모양만 있고 형상선이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 세부모양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아도 안 됩니다.

✓ 도면 내에 형상과 모양과 혼동되는 불필요한 선(지시선, 배경, 와이어프레임)등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자인 물품 이외에 배경이나, 장식물이 포함돼서는 안 됩니다.

O

잘된 예

✓ 형상과 모양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색상 유무는 필수 요건이 아님)

선의 종류와 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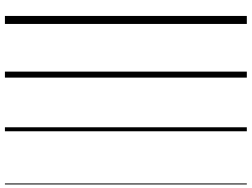

실 선 : ① 물체의 **형상**(외곽선)과 **모양**(모양선)을 나타내는데 사용
② 전체디자인 중 **부분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 받고자 하는 부분을 나타내는데 사용

빗 금 선 : 물체의 **절단면**을 표시하는데 사용

파 단 선 : 물체 내에 **생략부위**가 있을때 사용

파 선 : 전체디자인 중 **부분디자인 이외의 부분**을 나타내는데 사용

1점쇄선 : **부분디자인 경계**가 불명확할 경우에 그 경계를 나타내는데 사용
생략된 부분이 있는 물품의 절단된 부분을 나타내는데 사용

2점쇄선 : 생략된 부분이 있는 물품의 **절단된 부분**을 나타내는데 사용

실선(형상선/모양선)

형상선 • 물품의 형상(외곽)을 드러내는 선
* 보통 가장 굵은 선으로 표현합니다.

파선(점선) •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범위가 아닌 부분을 표현할때 사용하는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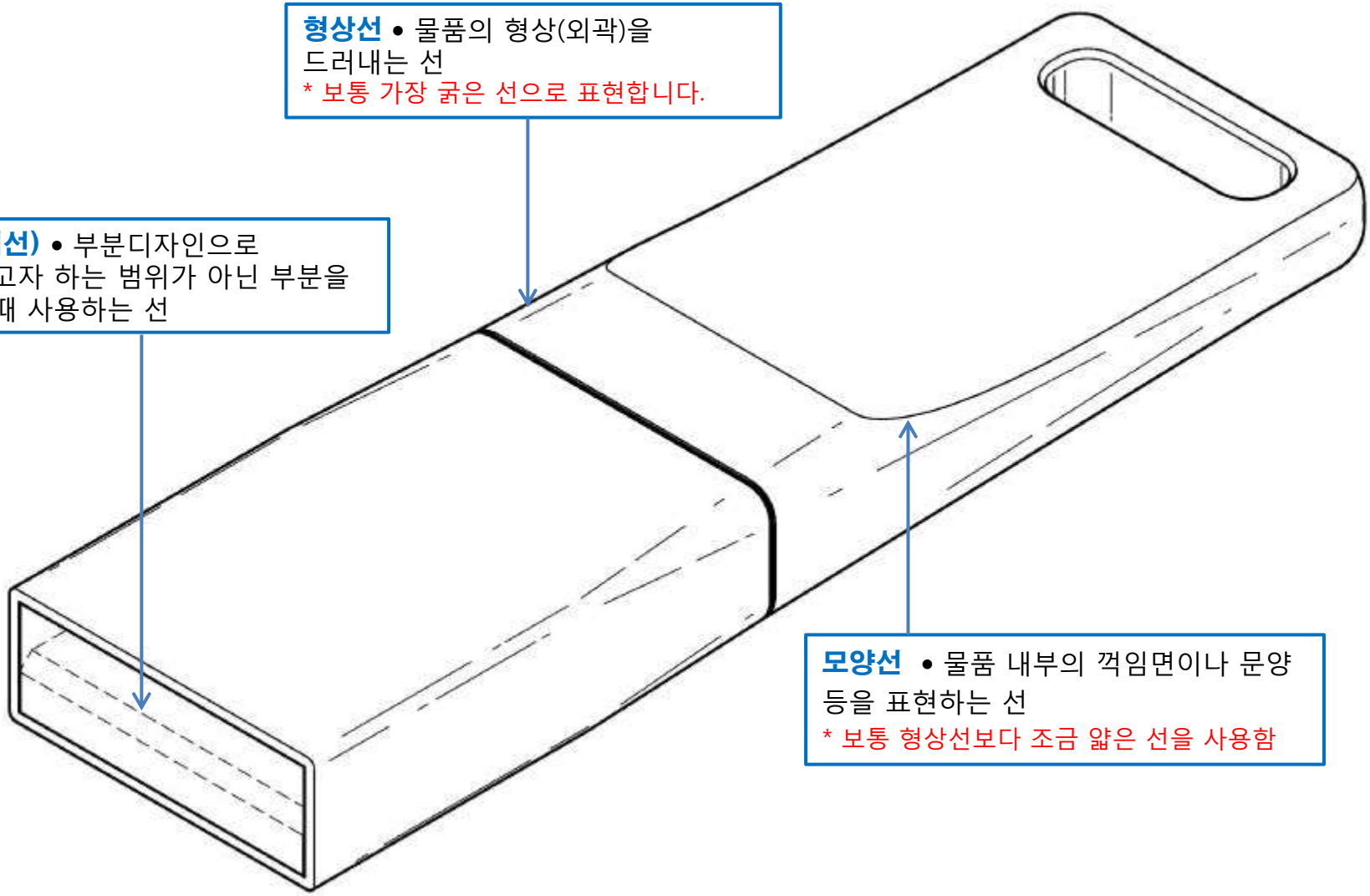

모양선 • 물품 내부의 꺽임면이나 문양 등을 표현하는 선
* 보통 형상선보다 조금 얇은 선을 사용함

USB메모리 (30-0944004)

세선, 파선, 일점쇄선, 이점쇄선

일점쇄선 •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경계를 나타낼때 사용하는 선

파선(점선) •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선

이점쇄선 • 부분확대도가 어느 부분인지를 나타내는 표시
* 주의: 부분확대도를 추가 제출할 때만 사용

음영선 • 물품의 외주면에 요철, 곡면 등의 형태를 표현함. 보통 형상선, 모양선보다 조금 얇은 선을 사용함
* 주의: 형상선/모양선과 혼동되도록 표현되어서는 안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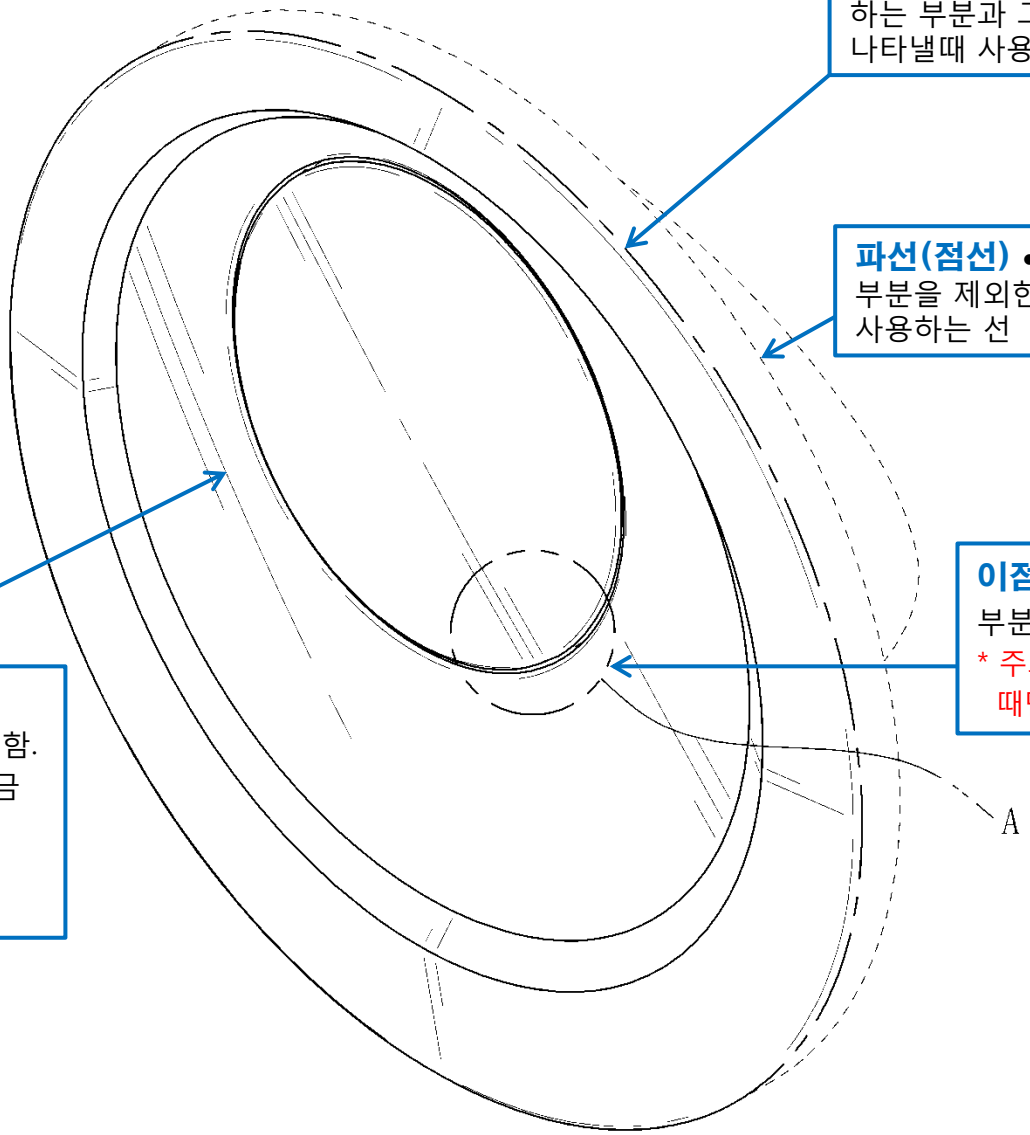

드럼세탁기용도어 (30-0967947)

세선

- (음영선) 디자인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물품의 외주면에 요철, 곡면 등의 형태를 표현하기 위해 '음영'을 사용** 합니다.

  ! 음영은 물품을 입체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 나타내는 것으로 그림자가 아님

  ✓ 음영은 세선, 점, 농담 등으로 표현하며, **모양과 혼동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

  ✓ 물품의 **형상선, 모양선과 구별되도록 가늘고 다소 끊어지는 듯한 선으로 표현**합니다.

  ✓ 음영을 사용한 경우, 그 취지 및 음영에 이용된 선, 점 등이 무엇을 표현하는지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선(細線, 가는 실선)은 도형 내에 **중심선, 기선, 수평선 등을 표시**할 때 사용합니다.

< 도면 내에 면의 굴곡을 표현하기 위하여 세선을 사용한 사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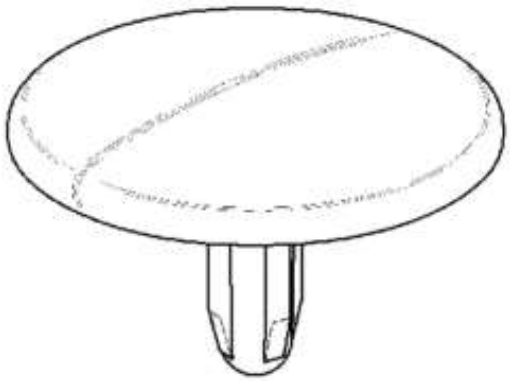

음영과 세선

- 음영 및 세선이 과도하여 물품의 형상선 또는 모양선과 혼동될 경우 거절이유 통지가 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음영표현 사례 >

과도한 음영선이 사용된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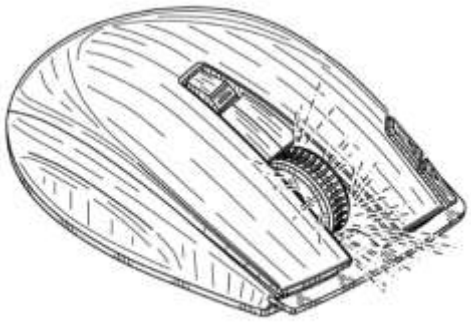

FIG. 8

U.S. Patent No. D688,664

과도한 음영 표현과 마우스 휠의 발광를 표현하는 불필요한 세선 등이 포함되어 있음 (다만, 참고도면으로 제출될 경우에는 무방)

경우에 따라 보정이 필요할 수 있는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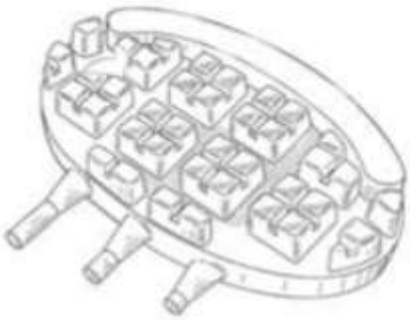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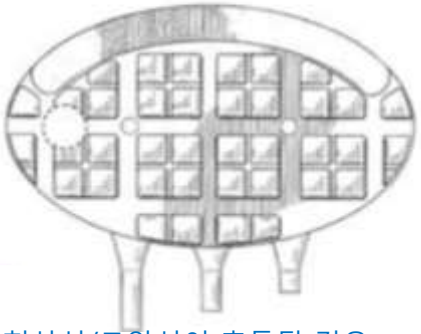

형상선/모양선이 혼동될 경우 거절이유가 통지될 가능성이 있음

잘 된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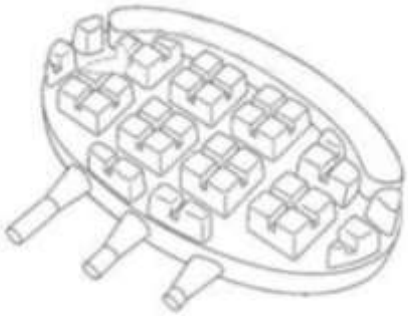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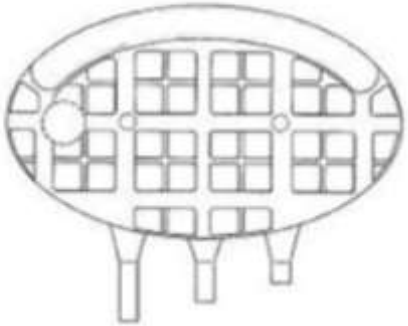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도면

3차원 입체 물품의 일반적인 도면 작성

- 3차원 물품은 전체적인 모습이 잘 드러나도록 여러 각도에서 바라본 물품의 도면을 작성합니다.
  - ✓ 도면의 개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도면작성 예시

전체의 모습을 나타낸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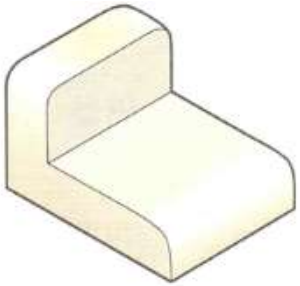

정면에서 본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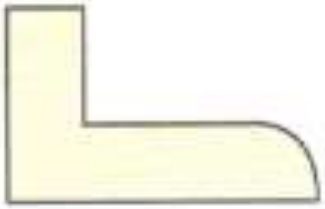

좌측에서 본 도면

위에서 내려다본 도면

뒷면에서 본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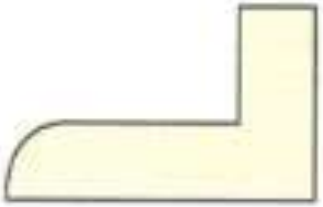

우측면에서 본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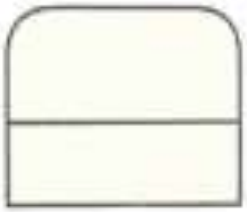

아래에서 올려다 본 도면

사진 촬영

- 디자인 실물이 있는 경우, 사진촬영이 가장 손쉬운 도면작성 방법입니다.
  사진 촬영시에도 일반적인 도면작성방법과 동일합니다.

✓ 물품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모두 드러나도록 여러 각도에서 촬영합니다.

도면작성 예시

[도면 1.1]

[도면 1.2]

[도면 1.3]

[도면 1.4]

[도면 1.5]

[도면 1.6]

[도면 1.7]

오토바이용 헤드라이트
(30-0525162)

사진의 배경

- 사진의 배경은 무채색을 권장합니다. 물품이 밝을 경우 배경을 어둡게, 어두운 물체는 배경을 밝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진 촬영후, 포토샵 등 그래픽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배경을 삭제하여도 무방합니다.

✓ 처음부터 물품의 배경에 검은 천 등을 대고 촬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검은 천의 구김 등이 함께 표현되어서는 안됩니다.

< 사진으로 작성된 도면의 배경 처리 사례 >

핸드폰 케이스 (30-0767610)

핸드폰 케이스 (30-0745606)

핸드폰 고리 (30-0530440)

사진 내에 다른 내용이 함께 촬영된 경우

- 도면내에는 등록받고자 하는 물품 이외에 부가적인 대상이 포함되어서는 안됩니다. 다만, 부가적인 물품이 등록받고자 하는 디자인의 부분과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원칙적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물품이 아닌 대상(손, 받침대 등)이 도면 내에 포함되어서는 안됩니다. 다만, 옷이나 장신구 등을 촬영할 때 불가피하게 신체의 일부분이나 마네킹 등이 포함되더라도 등록받고자 하는 대상과 명백히 구분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 부가적인 대상이 포함된 도면의 인정사례 >

X

O

O

O

중량물의 도면 작성

- **중량물(무거운 물품)**로 사용과정에 거의 바닥을 볼 일이 없고, 물품의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저면(바닥면)에 대한 도면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생략 이유를 [디자인의 설명]란에 '본원 디자인은 중량물이므로 저면부분은 생략함' 등으로 기재합니다.

도면작성 예시

[도면 1.1] [도면 1.2] [도면 1.3] [도면 1.4] [도면 1.5]

이동식 간이 매점 (등록번호 : 300641540)

[도면 1.1] [도면 1.2] [도면 1.3] [도면 1.4] [도면 1.5] [도면 1.6]

승용자동차 바디 (30-0683748)

평면디자인의 도면 작성

- 두께가 없는 2차원 평면물품은 앞면과 뒷면을 보이는 대로 그리거나, 원본 이미지파일, 또는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하/좌/우로 반복되는 직물지의 경우, 그 **반복되는 패턴이 1.5회 이상 표현되도록 도면을 작성**해야 합니다. **뒷면이 없는 경우에는 도면을 생략** 할 수 있으며, 생략이유를 [디자인의 설명]란에 '이면은 모양이 없음' 등으로 기재합니다.

도면작성 예시

직물지(30-0970217), [도면 1.1]
[디자인의 설명] 1. 도면1.1은 표면도이고, **이면도는 모양이 없어 생략함** 2. 재질은 면직물, 폴리에스테르, 합성섬유임 3. **모양은 상하좌우 반복됨** 4. 의류, 커텐, 쿠션, 가방, 홈인테리어 용품으로 사용됨

직물지(30-0974189), [도면 1.1]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천연섬유 및 합성섬유임. 2. 본원 디자인은 침구류에 사용되는 것임. 3. **도면모양은 상,하,좌,우 전폭임**. 4. **이면은 무모양이므로 생략함.** 5. 도면 1.1은 본 디자인의 표면도임.

화상디자인의 도면

- 화상디자인은 전체 물품을 파선(점선)으로 그리고, **등록받을 부분만 실선**(사진)으로 표현합니다.
  - ✓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경계가 있는 경우, 1점 쇄선으로 구분하며, 스크린 전체가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인 경우 1점 쇄선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화상 디자인이 표현된 도면 예시 >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신체단련기구용
디스플레이패널 (30-0841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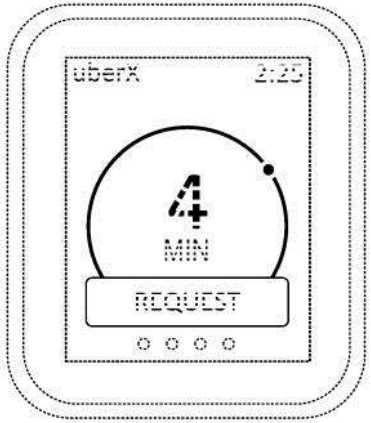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패널
(30-0874653-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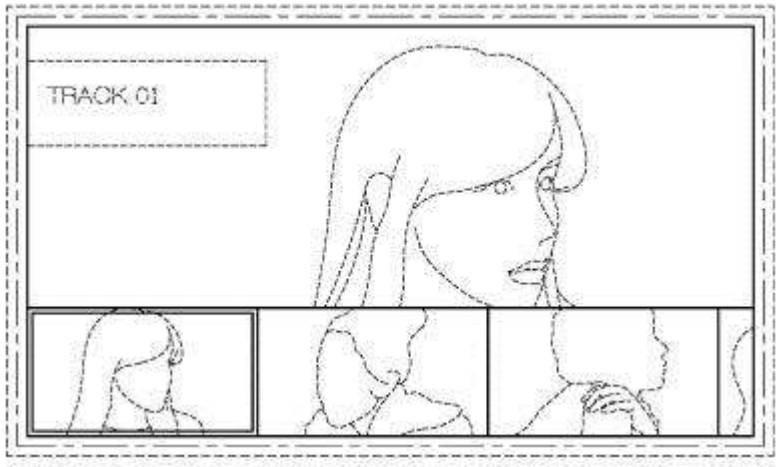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패널 (30-0747849)

동적화상디자인의 도면

- 화상디자인중 연속적인 화면의 움직임이 있는 경우, **변화되는 과정을 각각 도면으로 작성**합니다.

도면작성 예시

[도면 1.1] [도면 1.2] [도면 1.3] [도면 1.4] [도면 1.5] [도면 1.6] [도면 1.7]

[도면 1.8] [도면 1.9] [도면 1.10]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휴대용 단말기 (30-0980173)

한 벌 물품 디자인의 도면

- 2이상의 물품이 **한벌로 동시에 사용되고**, 그 한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는 경우**, 1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한 벌의 여성용 한복세트 ' ' 한 벌의 주방용 붙박이 물품세트 ' 등 다양합니다.

< 한벌 물품의 예시 >

한 벌의 스푼, 포크 및 나이프 (30-07784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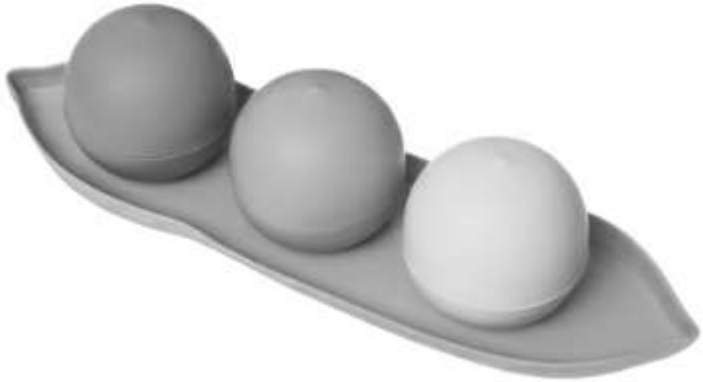

한 벌의 커피세트 (30-0808096)

한 벌 물품 디자인의 도면 예시

- 한벌물품인 경우, **전체의 모습이 한꺼번에 표현된 도면과, 개별물품 도면을 모두 제출** 합니다.
  - ✓ [도면A] 한벌물품의 전체 모습이 담긴 도면 / [도면B] 개별물품의 도면 / [도면C] 개별물품의 도면 / [도면D] 개별물품의 도면

한벌의 다기세트 (30-0973086)

도면작성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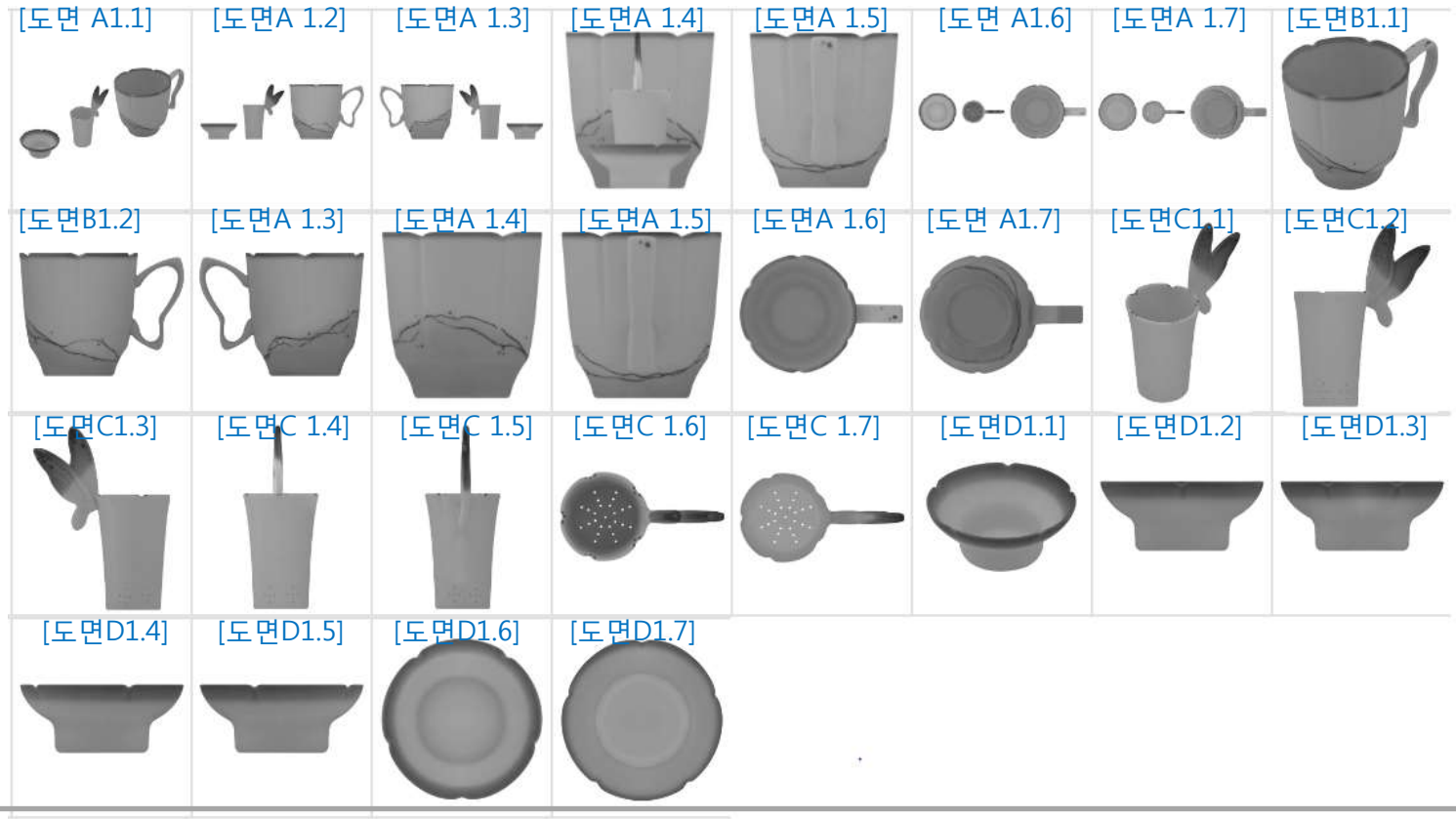

캐릭터 디자인이 포함된 도면

- 캐릭터 그 자체만으로는 디자인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물품과 결합되었을때 보호대상에 포함**되며, 캐릭터는 부분디자인으로 출원이 가능합니다.

< 캐릭터 표현의 바른 예 >

X

O

티셔츠 (30-0661535)

도면작성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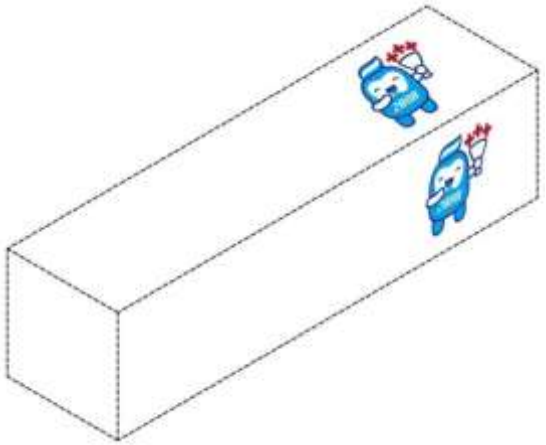

치약포장용 상자 (30-05978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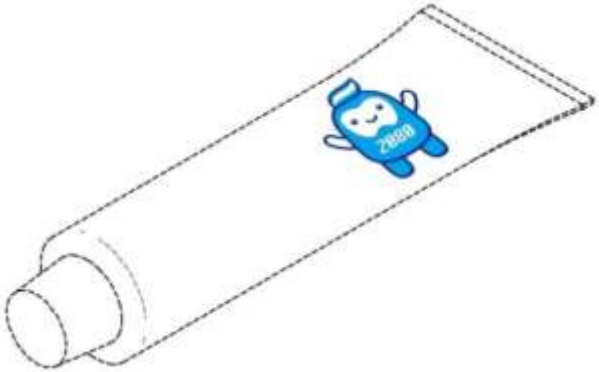

치약용기 (30-0595338)

투명한 부분이 포함된 디자인

- 물품내에 투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 **눈에 보이는대로 도면을 작성**하고, [디자인의 설명] 란에 투명부분에 대한 설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 발광다이오드 전구의 경우, 유리구 내부에 필라민트를 연한 선으로 표현합니다.

✓ 손목시계의 경우, 유리 뒷면으로 비치는 숫자와 바늘등을 눈에 보이는대로 표현합니다.

✓ 투명체 뒷면에 있는 모양은 다소 연한 선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면작성 예시

<발광다이오드 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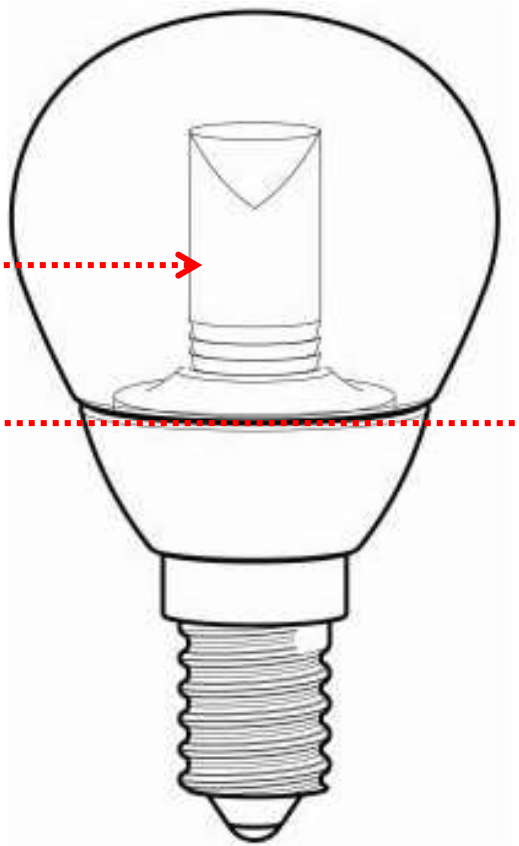

<손목시계 본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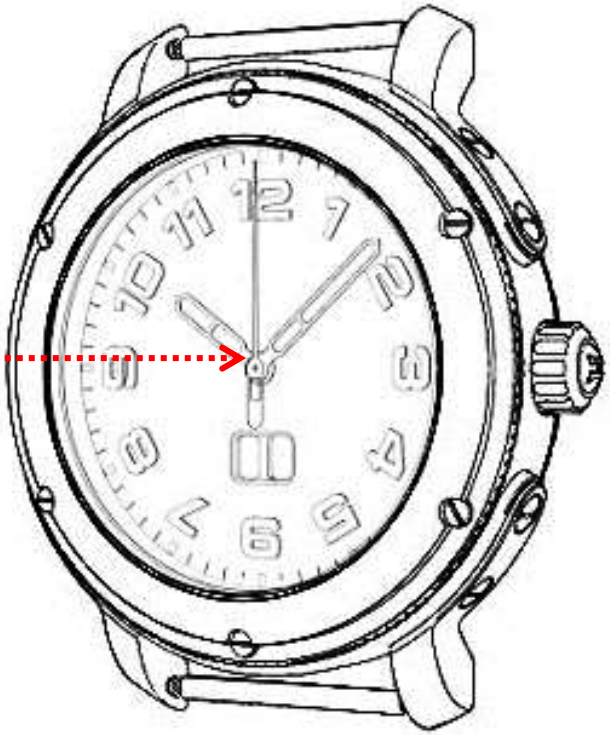

도면의 생략

- 동일한 단면을 가지는 긴 물품의 경우, 중앙부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생략된 부분에 대하여 [디자인의 설명]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디자인의 설명] 예시 : 본 디자인의 생략된 길이는 약 20㎝ 이상임.

<길이가 한정된 물품의 중간을 생략한 도면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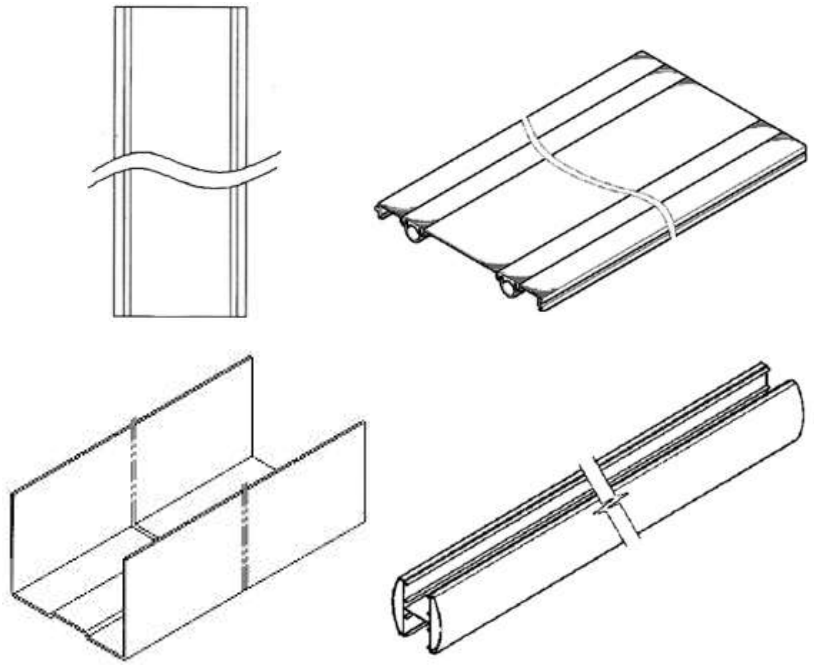

도면작성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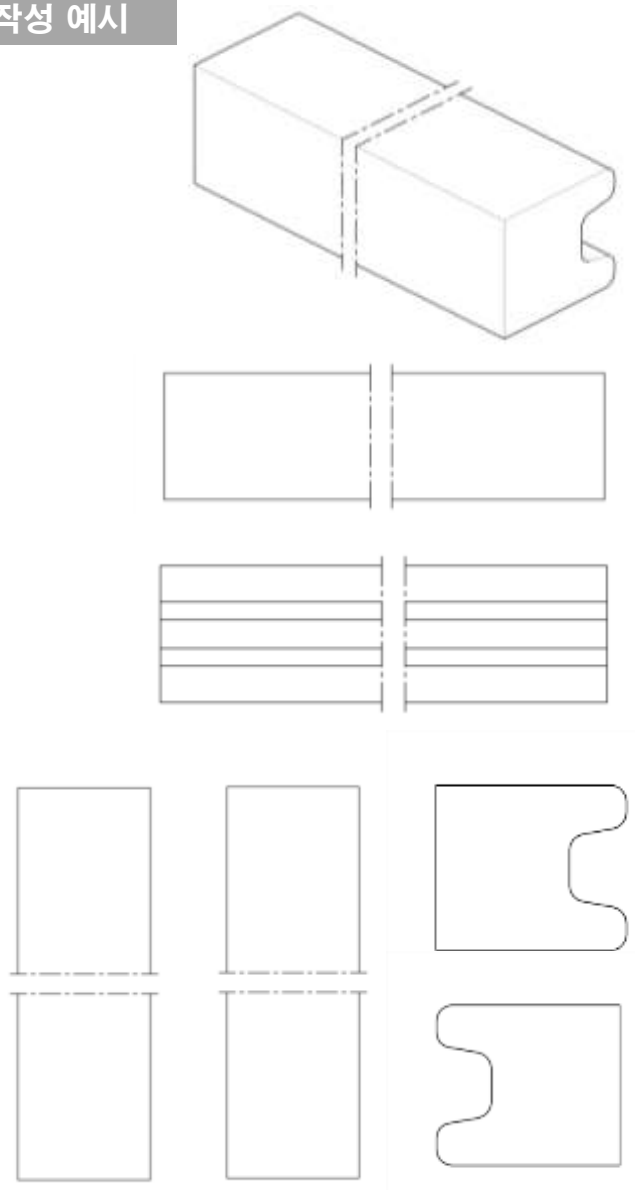

핸드폰 슬라이드용 가이드바 (30-0403759)

컴퓨터 그래픽

- 컴퓨터 렌더링(Rendering, 컴퓨터그래픽을 통해 3차원 화상을 만드는 과정)으로 도면작성시 사실적인 렌더링이나 와이어프레임(wire-frame) 형태의 렌더링이 모두 등록가능합니다.
  - ✓ 과도한 투시를 넣지 마십시오. 형상이 비틀어진 것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 ✓ 그림자 표현에 주의하십시오. 그림자가 너무 어두워서 물품의 형상과 모양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 거절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 와이어프레임은 가급적 삭제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물품의 외관에 무늬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작성된 도면 사례>

오토바이 (30-0724985)

요술봉완구 (30-08913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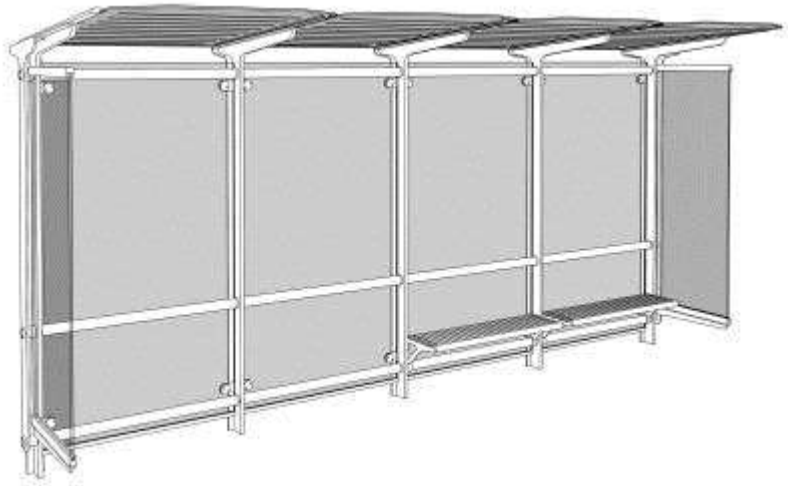

승강장 (30-0603202)

도면의 색상

- 디자인의 보호대상에 색상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도면 내에 구체적인 색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무채색과 유채색의 도면이 각각 권리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색상을 지정한 디자인과 무채색으로 작성된 디자인 간에 권리범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도면 내 색상 여부의 차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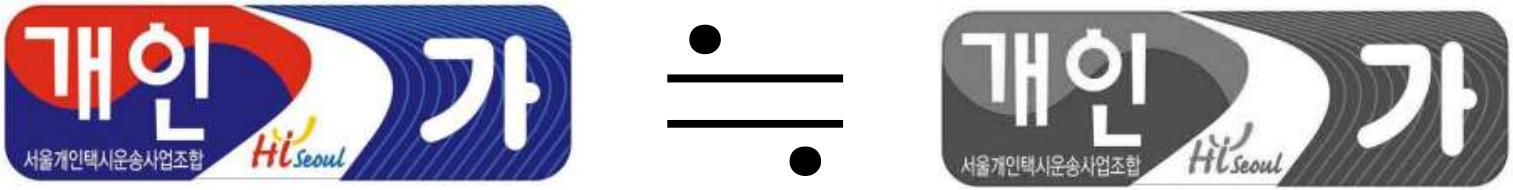

개인택시 부제 표시용 표딱지 (30-0438915)

✓ 도면 내에 특정한 부분만 채색을 할 경우, '부분디자인'으로 판단됩니다.
✓ 부분디자인이 아니라면, 도면 전체의 색상을 한꺼번에 제거해야 합니다.

관련내용: 49페이지

부분디자인의 표현

- 물품 중 특정한 부분만 등록받고자 한다면, 사진은 등록받지 않을 부분에 채색을 하고, 선도는 파선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등록받을 부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부분디자인 표시방법>

신발 (30-09869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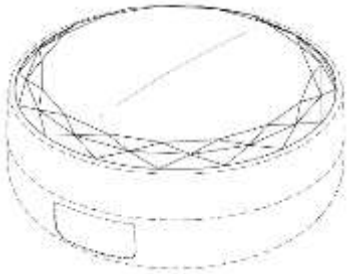

콤팩트 용기 (30-0933460)

신발 (30-0935235)

아이스크림용 포장지 (30-0953233)

도면작성 예

[도면1.1]

[도면1.2]

[도면1.3]

[도면1.4]

[도면1.5]

[도면1.6]

[도면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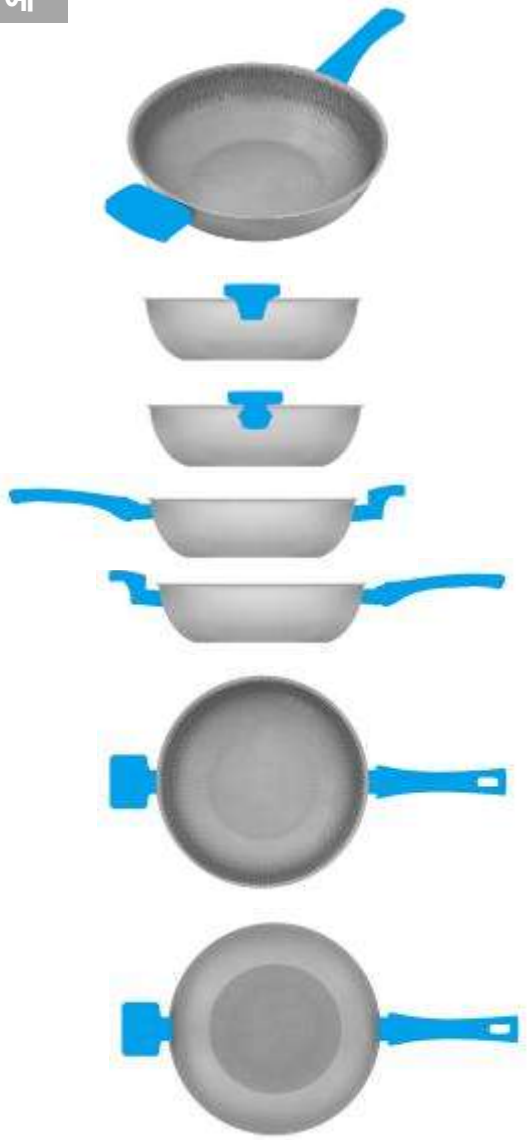

음식조리용팬 (30-0987252)

변화 전후의 표현

관련내용: 20페이지

- 움직이는 것, 열리는 것 등의 디자인으로서 움직임 또는 열림에 따라 디자인이 변화하는 경우에는, **움직임을 표현하는 일련의 도면**을 각각 여러 각도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 열리고 닫힌 상태의 전후 모습을 각각 [도면A] [도면B] 형태로 제출합니다.

< 변화 전후를 표현하는 방법 >

[도면A 1.1] [도면B 1.1] [도면C 1.1] [도면D 1.1]

도면작성 예시

완구용로봇 (30-09252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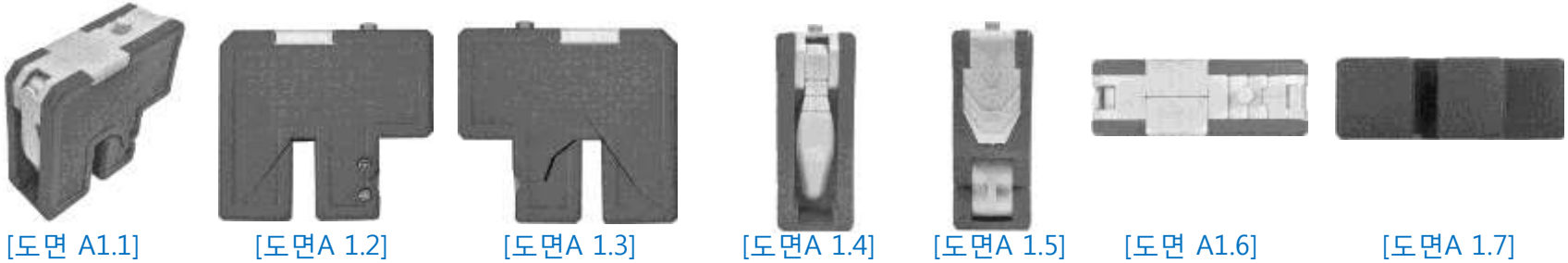

[도면 A1.1] [도면A 1.2] [도면A 1.3] [도면A 1.4] [도면A 1.5] [도면 A1.6] [도면A 1.7]

[도면 B1.1] [도면B1.2] [도면B1.3] [도면B1.4] [도면B1.5] [도면B1.6] [도면B1.7]

부가도면/참고도면 작성

- 부가도면은 분해사시도, 단면도 등을, 참고도면은 사용상태도, 분해도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도면작성 예시

〈사시도〉

〈분해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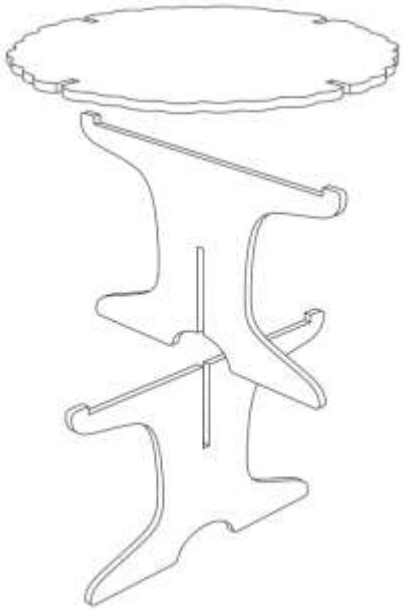

〈분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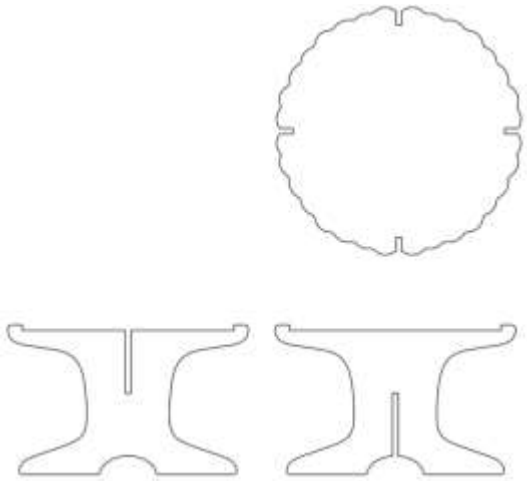

유아 놀이용 테이블 (30-0789274)

단면도

- 절단된 부분은 도면에 쇄선 등으로 표시(절단쇄선, 부호 및 화살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쇄선표현이 어려운 경우, 이와 상응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디자인의 설명]란에 도면의 '중앙종단면도' 또는 '중앙횡단면도'라고 적는 경우도 단면도로 인정이 됩니다.

<두께를 표현한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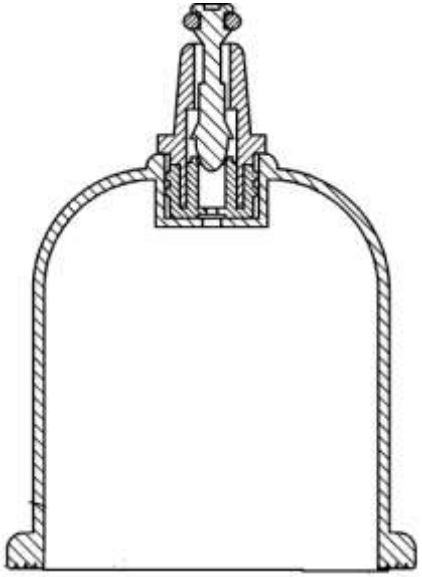

도면작성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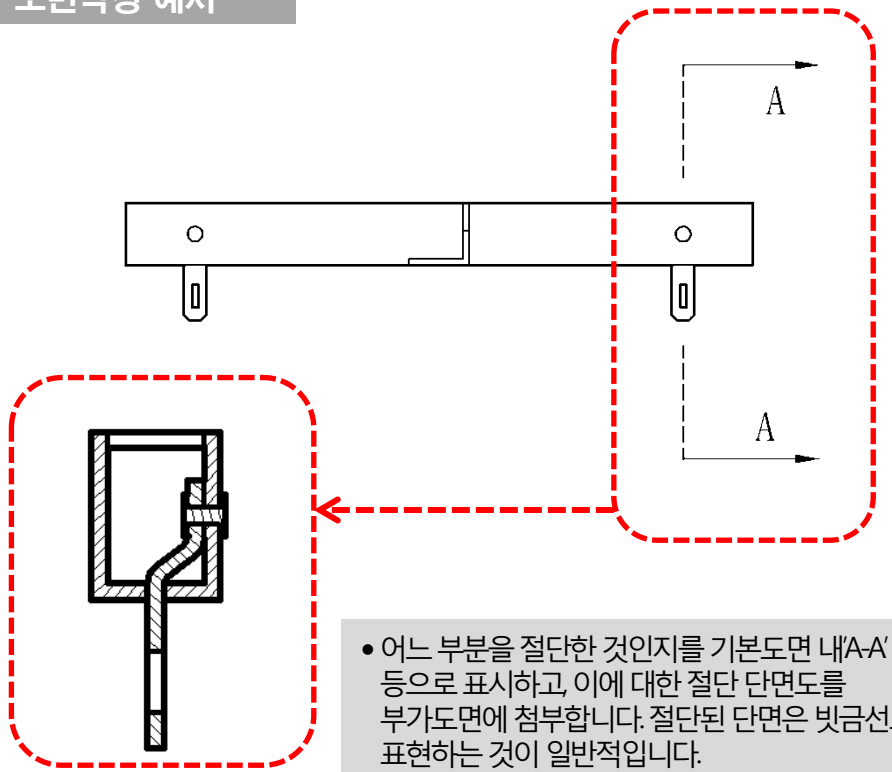

- 어느 부분을 절단한 것인지를 기본도면 내'A-A' 등으로 표시하고, 이에 대한 절단 단면도를 부가도면에 첨부합니다. 절단된 단면은 빗금선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거푸집연결구 (30-09943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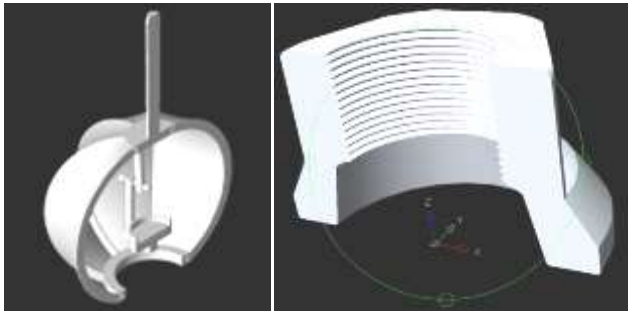

- 만일 렌더링 도면으로 빗금선 표현이 어려울 경우, 디자인의 설명란에 해당도면이 단면도임을 설명해야 합니다.

사용상태도

- 원칙적으로 도면 내에 디자인 등록받을 물품 이외의 물품 등이 포함되어서는 안되지만, 예외적으로 [사용상태도](참고도면)에는 등록받을 물품 이외의 인체나 부가적인 물품 등의 표현이 가능합니다.

도면작성 예시

[기본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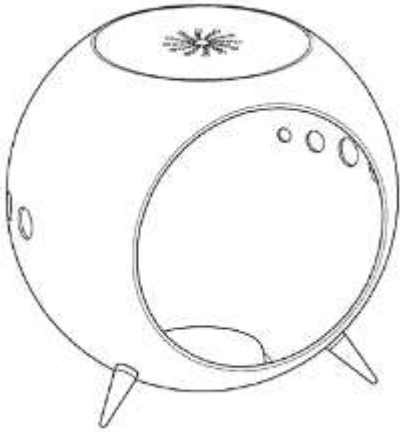

[참고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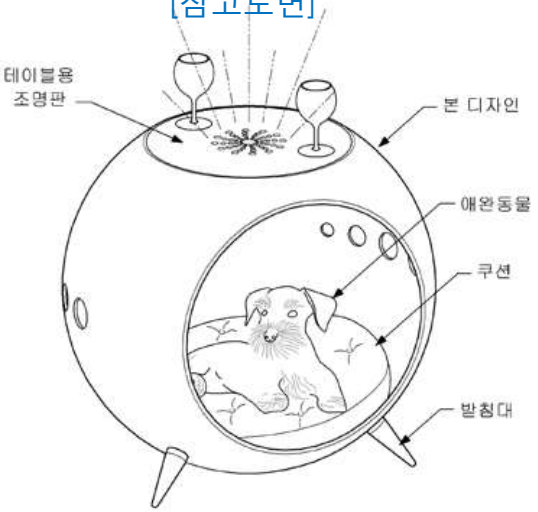

애완동물용 집 (30-0700666)

[기본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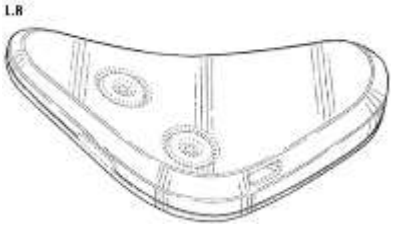

[참고도면]

DM/089543, design No. 1 for "wearable neuromodulator" (Cl.24-01)

보조선

- 원칙적으로 기본 도면 내에는 보조선이나 기호 등이 포함되어서는 안됩니다. 다만, 단면도, 부분확대도, 절단도 등의 표현을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보조선, 기호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면작성 예시

[단면도를 표현할 때]
부가도면에 단면도가 있을때, 어느 부분을 절단한 것인지를 표시할 수 있음

인버터 (30-0974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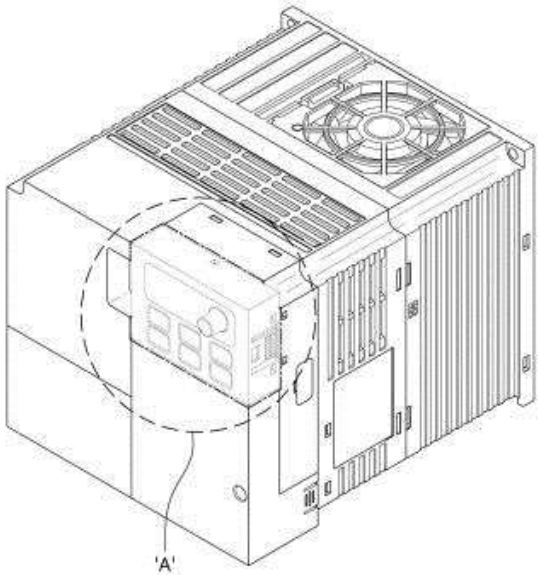

[확대도를 표현할 때]
부가도면에 확대도가 있을때, 위와 같은 표시를 할 수 있음

전자레인지 (30-09796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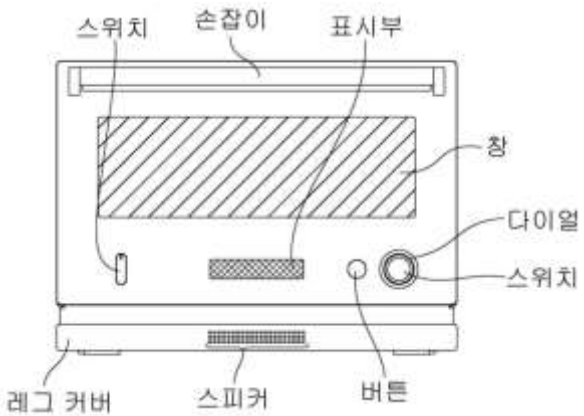

[기능 설명을 위한 보조선]
원칙적으로 기본도면에는 사용할 수 없으나, **참고도면으로 제출하는 것은 가능함**

단면확대도

- 필요한 경우, 단면확대도 등의 도면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도면작성 예시

[도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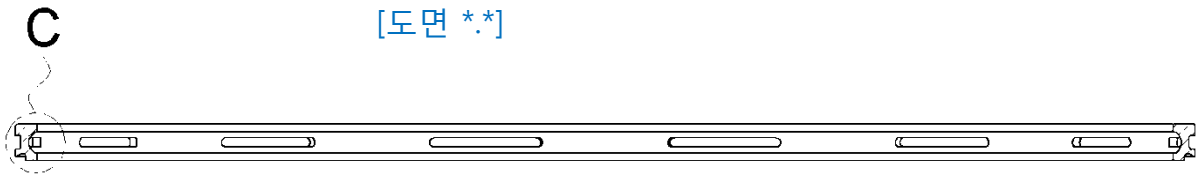

[부가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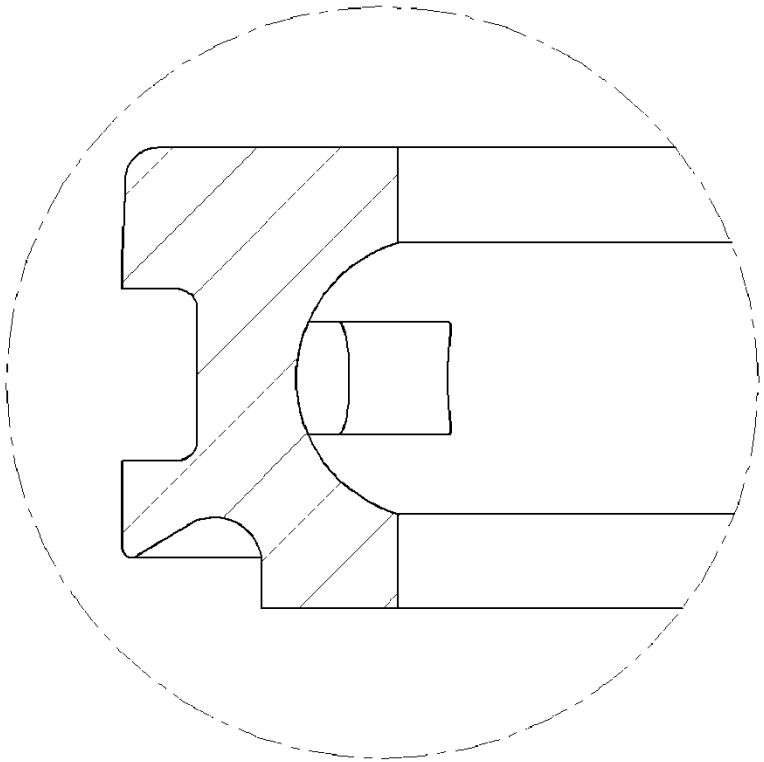

내연기관용 피스톤링(30-0993095)

4

출원서작성 따라하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서 디자인출원서 작성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1. 일반적 유의사항

가. 용지는 가로 210㎜, 세로 297㎜ [보존용지(2종) 70g/㎡]의 A4 용지를 세로로 하여 위쪽을 철합니다.

나. 용지는 위쪽 40㎜, 왼쪽 25㎜, 아래쪽 및 오른쪽 20㎜의 여백을 두고 내용을 적으며, 용지의 아래쪽 여백 중앙에 아라비아숫자로 쪽 번호를 적습니다.

다. 도면은 흰색을 바탕으로 하여 진한 먹물 또는 제도용 검은색 잉크로 선명하게 도시(圖示)하며, 연필, 잉크(제도용 검은색 제외), 크레파스 또는 그림물감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생산된 이미지파일(300dpi 이상의 해상도) 형식인 경우에도 위에 준하여 도시합니다. 다만, 도면을 3차원 모델링(Modeling)파일 형식으로 제출 시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바탕색을 무채색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선도 / 컴퓨터 그래픽 / 사진으로 작성된 도면 사례>

<선도>

<컴퓨터 그래픽>

<사진>

라. 도형 내에는 **중심선, 기선(基線), 수평선 등을 표시하기 위한 세선(細線) 또는 내용의 설명을 하기 위한 지시선, 부호 또는 문자를 적어 넣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음영을 넣을 경우에는 모양과 혼동되지 않는 범위에서 세선, 점 또는 농담(濃淡) 등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단면을 표시할 경우 절단된 부분에 해칭(연속된 빗금)을 사용합니다.

관련내용: 29/31/52페이지

<도면내에 세선이 포함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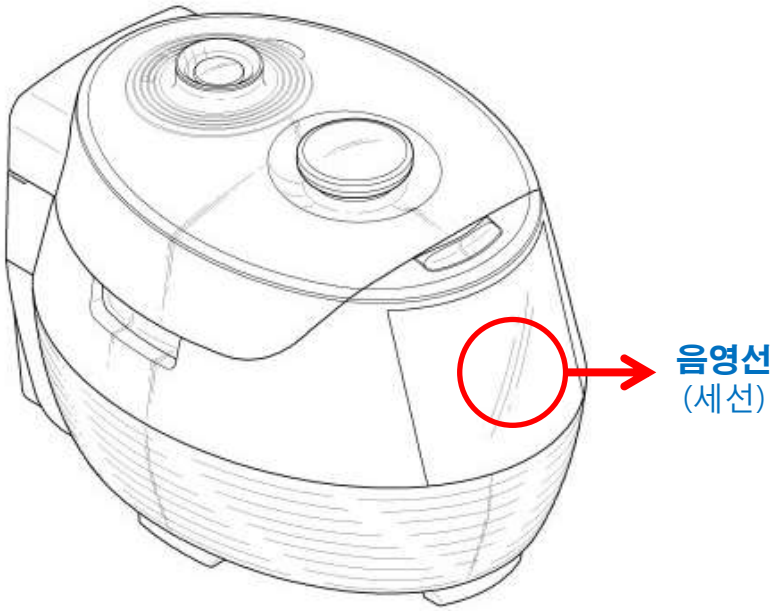

도면 내에 음영을 표현하고 디자인의 설명란에 '도면 내에 표현된 세선은 곡면 및 평면임을 나타내기 위해 음영선임'이라 적은 것은 허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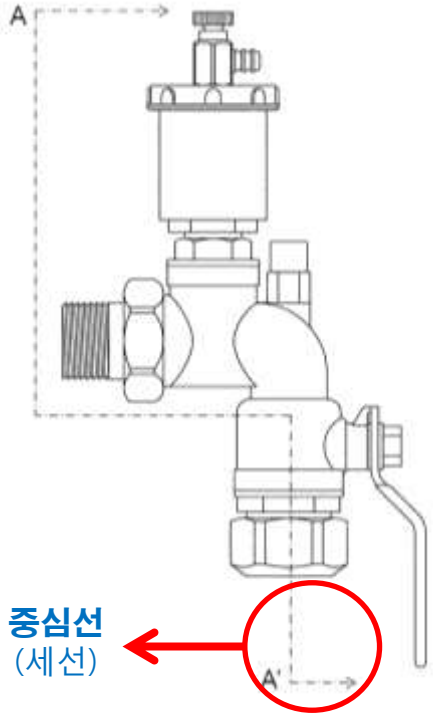

도면 내에 (복합)단면부를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요지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허용 가능

마. 식별 항목의 기재

1) 서식에 규정된 각 표제는 식별기호(【】)와 식별 항목명으로 구성된 식별항목으로 적으며, 식별 항목의 다음 줄에 해당 내용을 적습니다.

2) 식별기호(【】)는 식별 항목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도면 내용은 필요한 경우에 가로(횡)로 배치할 수 있으나, 도면 내용의 윗부분이 용지의 오른쪽이 되도록 배치하며, 【도면 ○.○】 식별항목은 가로(횡)로 적어서는 안 됩니다.

4) 도면의 기재순서는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와 창작내용을 가장 잘 표현하는 도면을 우선순위로 하여 【도면 1.1】, 【도면 1.2】, 【도면 1.3】 … 순으로 적습니다. 또한, 디자인의 구체적인 형태를 표현하기 위하여 부가도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개도, 단면도, 절단부 단면도, 확대도 또는 부분 확대도 등을 【부가도면 1.1】, 【부가도면 1.2】, 【부가도면 1.3】 … 순으로 식별 항목을 만들어 적되, 그 도면의 명칭은 다음 [예 1]과 같이 【부가도면 ○.○】 란의 다음 줄에 적습니다. 그 외에 디자인의 용도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참고도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상태도 등을 【참고도면 1.1】, 【참고도면 1.2】, 【참고도면 1.3】 … 순으로 식별 항목을 만들어 적되, 그 도면의 명칭은 다음 [예 2]와 같이 【참고도면 ○.○】 란의 다음 줄에 적습니다.

[예 1] 【부가도면 1.1】

단면도

해당 도면 내용

[예 2] 【참고도면 1.1】

사용상태도

해당 도면 내용

5) 디자인의 내용을 충분히 표현하기 위하여 여러 벌의 도면이 필요한 경우(움직이는 것, 열리는 것 등의 디자인으로서 변화 전・후의 상태를 각각의 도면에 표현하려는 경우 등)에는 다음 예와 같이 각 도면의 식별 항목명에 영문자 대문자(A, B…순)를 적어서 구분하고, 【디자인의 설명】 란에 통상적인 디자인의 설명을 먼저 한 후에, "변화 전 상태의 도면은 도면A 1.1부터 도면A 1.7까지이며, 변화 후 상태의 도면은 도면B 1.1부터 도면B 1.7까지" 라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그 구분 기준을 명시합니다.

관련내용: 20페이지

[예]【물품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
【도면A 1.1】
【도면A 1.2】
…
【도면A 1.6】
【도면A 1.7】
【참고도면A 1.1】
【참고도면A 1.2】
【도면B 1.1】
【도면B 1.2】
…
【도면B 1.6】
【도면B 1.7】
【참고도면B 1.1】
【참고도면B 1.2】

도면작성 예시

도면A 1.1

도면B 1.1

도면C 1.1

6)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도면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물품류】 란의 위에 【디자인의 일련번호】 란을 만들어 해당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예]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3
【물품류】 제1류

바. 도면의 쪽수가 여러 쪽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각 디자인마다 각 페이지 아랫부분의 여백 중앙에 도면의 총 쪽수와 해당 쪽과의 일련관계를 표시합니다.

[예] 3-1, 3-2, 3-3

가. 도면의 기초정보

1) 【물품류】 란에는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적은 것과 같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속하는 물품류를 적습니다.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란에는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적은 것과 같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명을 적습니다.

관련내용: 17페이지

3) 【디자인의 설명】 란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2(디자인의 설명란의 기재사항)에 따라 적습니다.

4)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 란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3(창작내용의 요점란의 기재방법)에 따라 적습니다.

관련내용: 22페이지

나. 일반적 디자인의 도면

1) 디자인의 도면은 등록받으려는 디자인의 창작내용과 전체적인 형태를 명확하고 충분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한 개 이상의 도면을 도시(圖示)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각 도면에 대한 설명을 [디자인의 설명]란에 다음 예와 같이 적으며, 도면을 3차원 모델링(Modeling) 파일 형식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디자인의 창작내용을 가장 잘 표현하는 화면을 정지화면으로 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도면 1.1은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1.2는 디자인의 앞면을 표현하는 도면이며, 도면 1.3은 디자인의 뒷면을, 도면 1.4는 디자인의 왼쪽면을, 도면 1.5는 디자인의 오른쪽면을, 도면 1.6은 디자인의 윗면을, 도면 1.7은 디자인의 아랫면을 표현하는 도면임

[예 2] 도면 1.1은 디자인의 표면을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1.2는 디자인의 이면을 표현하는 도면임

※ 다만, 아래 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도면만을 제출할 수 있으나, [디자인의 설명]란에 그 이유를 아래 표의 기재 방법과 같이 적어야 합니다.

구분	제출 도면	기재 방법
가. 앞면부분과 뒷면부분이 같거나 대칭인 경우	앞면부분 또는 뒷면부분	"뒷면부분은 앞면부분과 동일(대칭)이므로 생략함" 또는 "앞면부분은 뒷면부분과 동일(대칭)이므로 생략함"
나. 왼쪽면부분과 오른쪽면부분이 같거나 대칭인 경우	왼쪽면부분 또는 오른쪽면부분	"오른쪽면부분은 왼쪽면부분과 동일(대칭)이므로 생략함" 또는 "왼쪽면부분은 오른쪽면부분과 동일(대칭)이므로 생략함"
다. 윗면부분과 아랫면부분이 같거나 대칭인 경우	윗면부분 또는 아랫면부분	"아랫면부분은 윗면부분과 동일(대칭)이므로 생략함" 또는 "윗면부분은 아랫면부분과 동일(대칭)이므로 생략함"
라. 가, 나, 다 외에 도면 중 같은 부분이 여러 개인 경우	같은 부분들 중 한 개의 부분	해당 이유를 설명
마. 항상 설치 또는 고정되어 있어서 특정 부분을 볼 수 없는 경우	특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해당 이유를 설명
바. 화상디자인의 경우	화상디자인이 도시되는 부분	해당 이유를 설명

[예] 앞면부분과 뒷면부분이 동일하여 앞면부분만 제출하는 경우

[도면 1.1]은 이 디자인의 앞면부분을 표현하는 부분이며, 뒷면부분은 앞면부분과 동일이므로 생략함.

2) 1)항의 도면만으로는 물품의 디자인을 명확하고 충분하게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개도, 단면도, 절단부 단면도, 확대도 또는 부분 확대도 등 부가도면을 【부가도면】 란에 추가로 도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도면에 대한 설명을 【디자인의 설명】 란에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도면에 음영을 넣을 경우에는 모양과 혼동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작성합니다.

관련내용: 51/52페이지

[예] 부가도면 1.1은 도면 1.3 중 A부터 A′ 까지의 절단면을 표현하는 도면임

3) 1)항, 2)항의 도면만으로 그 디자인의 용도 등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상태도 등 참고도면을 【참고도면】 란에 도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도면에 대한 설명을 【디자인의 설명】 란에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참고도면 1.1은 이 물품의 사용상태를 나타내는 것임

4) 물품의 일부분의 도시를 생략하여도 디자인을 명백히 알 수 있거나, 도면 작성상 생략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일부분의 도시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생략한 부분을 **두 선의 평행한 1점쇄선(鎖線)으로 절단한 것처럼 표시하거나 이와 상응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필요한 경우 【디자인의 설명】 란에 그 취지 및 생략한 부분의 도면상 길이를 적습니다.

관련내용: 19/46페이지

5) 봉재(封材), 선재(線材), 판재(版材), 관재(棺材) 등과 같이 **형상이 연속하는 것 또는 지물(紙物)과 같이 모양이 연속되거나 반복적으로 연속하는 것을 표시하는 도면은** 그 연속 또는 반복적으로 연속하는 상태를 알 수 있게 도시하며, 필요한 경우 **【디자인의 설명】란에 형상이나 모양이 어느 한 방향 또는 상하좌우로 연속 또는 반복하는 것인지 등을 적습니다.**

6) 단면도 또는 **절단부 단면도의 절단면에는 평행사선**을 긋고(이질의 결합에 따른 디자인적 표현을 나타내려면 각기 다른 방향의 평행사선을 긋습니다), 그 절단된 부분을 그 밖의 도면에서 쇄선으로 표시하되, 쇄선의 양끝에 부호를 붙이고 화살표로 절단면을 보는 방향을 표시하거나 이와 상응하는 방법으로 표시합니다.

관련내용: 52페이지

7) 부분 확대도를 도시할 경우에는 그 확대한 부분을 해당 부분 **확대도의 원래의 도면에 쇄선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상응하는 방법으로 표시합니다.

관련내용: 55페이지

도면작성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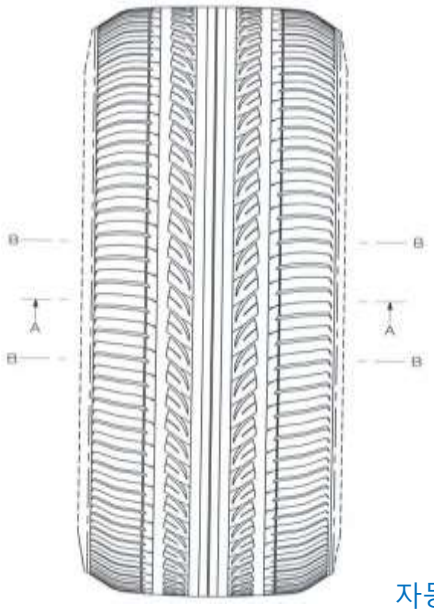

<부분확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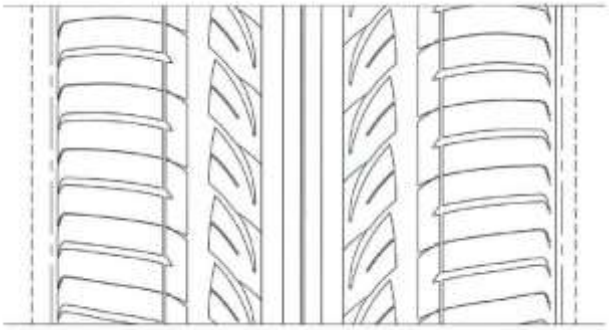

자동차용 타이어 (30-0542527)

다. 특수한 디자인의 도면

1) 조립완구와 같이 그 구성물의 도면만으로는 사용의 상태를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것은 그 만들어지는 상태 또는 완성된 상태를 표시하는 도면을 첨부하고, 조립한 후 분해하는 것과 같이 조립한 상태의 도면만으로는 분해된 상태를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것은 각 구성물의 도면을 추가합니다.

관련내용: 50페이지

2) 움직이는 것, 열리는 것 등의 디자인으로서 움직임 또는 열림에 따라 디자인이 변화하는 경우에는, 움직임을 표현하는 일련의 도면을 도시하거나 변화 전과 변화 후 상태의 도면을 각각 도시하고, 그 도면에 대한 설명을 【디자인의 설명】 란에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관련내용: 50페이지

[예] 도면A 1.1부터 도면A 1.7까지는 열린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이고, 도면B 1.1부터 도면B 1.7은 닫힌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임

3)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투명한 디자인의 도면은 다음의 요령에 따라 작성하거나 이와 상응하는 방법으로 작성합니다.

관련내용: 45페이지

① 바깥쪽 둘레에 색채가 없어 모양이 없는 경우에는 **투명하게 보이는 부분은 보이는 대로 표시합니다.**

② 바깥쪽 둘레의 바깥면・안쪽면 또는 그 두께면의 어느 한 부분에 모양 또는 색채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뒷면 또는 밑바닥의 모양 또는 색채를 나타내지 않고 겉으로 나타나는 모양 또는 색채만을 나타냅니다.

③ 바깥쪽 둘레의 바깥면・안쪽면 또는 그 두께면이나 바깥쪽에 둘러싸인 내부의 어느 곳에 둘 이상의 형상・모양 또는 색채가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형상・모양 또는 색채를 각 면에 표시합니다.

라. 부분디자인의 도면

1) 부분디자인을 **도면에 도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전체디자인 중 부분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은 실선으로 표현하거나 이와 상응하는 방법으로 표현하고, 그 외의 부분은 파선(破線)으로 표현하거나 이와 상응하는 방법으로 표현** 하여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부분을 명확히 특정합니다.

관련내용: 49페이지

2) 부분디자인을 견본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전체디자인 중 부분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부분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검정색 등 무채색으로 칠하여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부분을 명확히 특정합니다.

3) 부분디자인을 **사진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전체디자인 중 부분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부분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검정색 등 무채색으로 칠하여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부분을 명확히 특정한 다음 이를 촬영한 사진을 출원합니다.** 다만, **전체디자인이 검정색 등 무채색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무채색으로 칠하여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부분을 명확히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유채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내용: 49페이지

4) 부분디자인을 디자인등록출원하는 경우에 도면·사진 또는 견본에서 해당 부분을 특정하고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디자인의 설명】 란에 적습니다.

5) 그 밖의 작성방법은 이 서식의 기재방법 제2호 도면의 작성방법 중 나목(일반적 디자인의 도면) 및 다목(특수한 디자인의 도면)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전자문서 이용시 유의사항>

가. 입력가능 문자 및 이미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표준(KSC5601, KS 2바이트 완성형)문자에 포함된 문자 및 기호만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포함되지 않은 특수문자 또는 도형 등은 이미지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나. 이미지는 다음과 같은 요령에 따라 입력합니다.

1) 도면 내용의 **이미지파일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 **(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파일이어야 합니다.

2) 디자인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흑백 또는 컬러 이미지의 입력이 허용되며, 이들의 이미지파일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파일이어야 합니다.

3) 도면 내용의 이미지는 '삽입그림'의 형식으로 완전히 삽입·저장되어야 하며, '객체 연결 및 삽입' [OLE(Object Linking and Embedding)] 또는 '동적 자료교환' [DDE(Dynamic Data Exchange)]의 형식으로 연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 도면을 **3차원 모델링(Modeling)파일** 형식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3DS(3D Studio), DWG(Drawing), DWF(Design Web Format), IGES(Initial Graphic Exchange Specification) 또는 3DM(3 Dimensional Modeling)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수로 제출할 경우에는 모든 디자인을 3차원 모델링파일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라. **화상아이콘디자인**을 동영상파일 형식의 참고도면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SWF(Small Web Format),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 WMV(Window Media Video) 또는 Animated GIF(Graphics Interchange Format)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영상에는 디자인의 대상을 명확히 표현하여 중화질(640× 480) 수준에 초당 용량이 600~700K/sec를 넘지 않아야 하며, **1출원의 용량은 총 200MB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나홀로 출원을 위한 디자인도면 작성 가이드북

- 발행일 : 2019년 3월
- 발행인 : 특허청장 박원주
- 발행처 :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www.kipo.go.kr)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TEL. (042) 481·8602

FAX. (042) 472·7470

이용허락 유형	표시 마크	이용허락범위
[제4유형] 제1유형+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 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금지